

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「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연천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8일

연천군의회 의장

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2)

3. 개정 조례안: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1월 25일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연천군(의회)홈페이지 등

- 제출서식 : 별첨(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서)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전화번호,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

라. 제출기관 : 연천군 의회사무과

- 주소 :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(우 11017)

- 전화 : 031-839-2503 / FAX : 031-839-2509

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연천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의회사무과
입안자	발의 의원	연천군의회 의원 심 상 금 외 6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연천군</u> <u>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</u> <u>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</u> <u>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</u> <u>다.</u></p> <p><u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</u> <u>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</u> <u>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p><u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</u> <u>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</u> <u>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u></p> <p><u>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</u> <u>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</p> <p><u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u></p> <p><u>4. 의원의 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</u> <u>료 취합·분석 지원</u></p> <p><u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</u> <u>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</p> <p><u>6. 기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</u> <u>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</u> <u>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</p> <p><u>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</u></p>

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
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
받는다.